15-01-049878 ◀주의사항▶

- 1 국가기술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시해야 합니다.
- 2.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취업 중인 사업체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.
- 3.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, 차용, 알선하면 「국가기술자격법」제26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,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
- 4.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.

국가기술자격증

■ 자격번호: 15202050010N

■ 자격종목: 정보처리기사

명: 이재성

■ 생년월일: 1985.01.14

위 사람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■ 합격 연월일: 2015년 07월 31일

2015년 107월 31일 ■ 발급 연월일:

미래창조과학부

※본 국가기술자격증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23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 · 발급함.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